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하남시장(도시농업과)

제출일 : 2022. 6.

1. 제안이유

○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더불어 늘어나는 동물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동물보호 의식 고취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는 등 조문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동물복지계획의 시행,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복지사업, 길고양이의 관리,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 운영, 동물보호명예 감시원 조문 신설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 나. 보호비용의 지급 및 징수,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조문 삭제 (제14조제4항 및 종전 제15조)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전부 정비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소병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제5조제5항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연임 조항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있었으며,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도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제외)"라고 되어있어 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제19조제2항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에 관하여 근거가 마련될 시급식소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급식소 설치는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주민들로부터 반대 민원이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